

### ●문화재청공고제2018-177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94호 「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」 등 7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8년 5월 14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고명 : 국가지정문화재<국보·보물>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(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7건)

가. 대상 문화재

연번	지역	유형	지정번호	문화재명
1	충북	보물	94	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
2	충남	보물	185	부여 무량사 오층석탑
			233	부여 무량사 석등
			356	부여 무량사 극락전
3	충남	보물	217	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
4	충남	보물	224	서천 성북리 오층석탑
5	경남	보물	294	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
6	경남	보물	376	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
7	경남	보물	474	함양 벽송사 삼층석탑

나. 사 유

- 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.

다. 조정내용 : 붙임 참고

라. 기준의 적용

- 본 허용기준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 제6항 및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.
-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2항,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.

2. 예고일자 : 관보 공고일

3.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

4. 특기사항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새소식 「문화재지정예고」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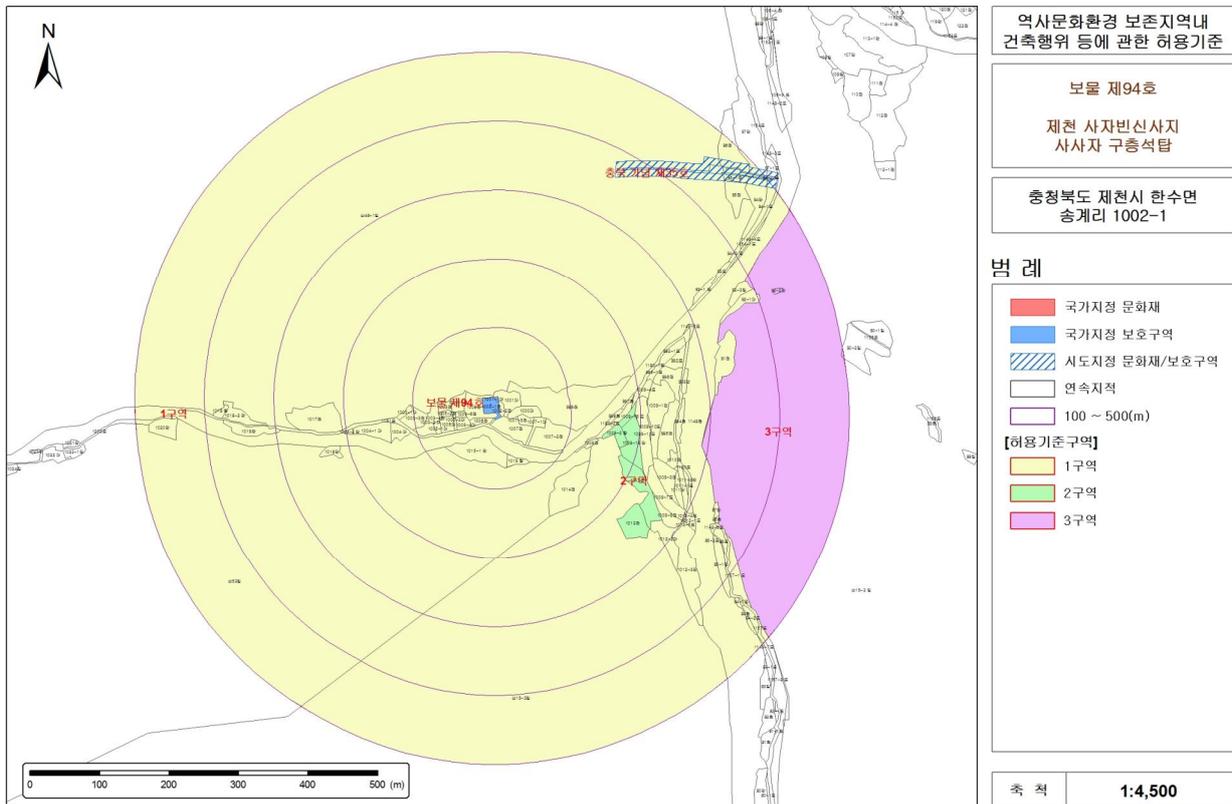
-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
  - 전화 (042)481-4918 / 팩스 (042)481-4939
  - 주소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

붙임 :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(안) 및 도면 1부. 끝.

<붙임>

01. 보물 제94호 “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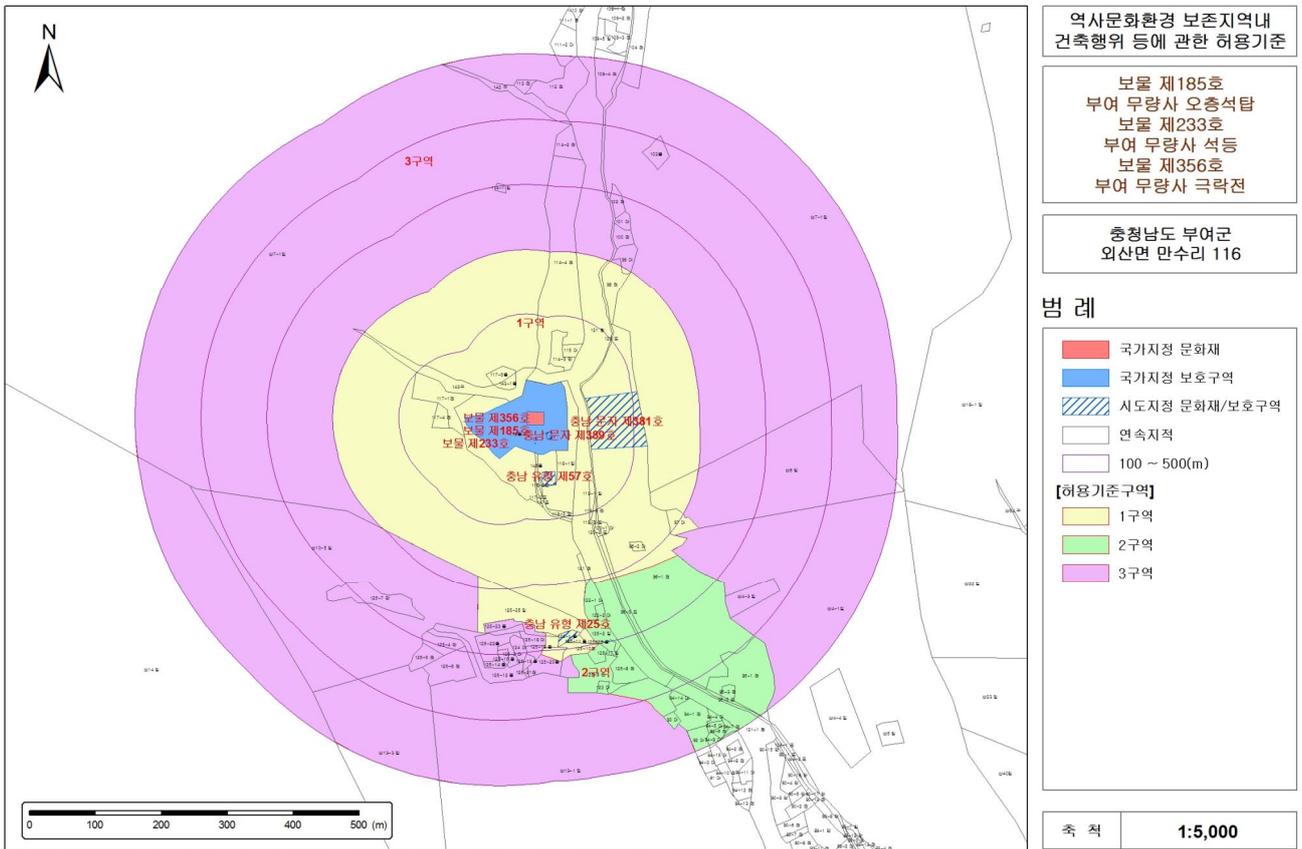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02. 보물 제185호 “부여 무량사 오층석탑”, 보물 제233호 “부여 무량사 석등”, 보물 제356호 “부여 무량사 극락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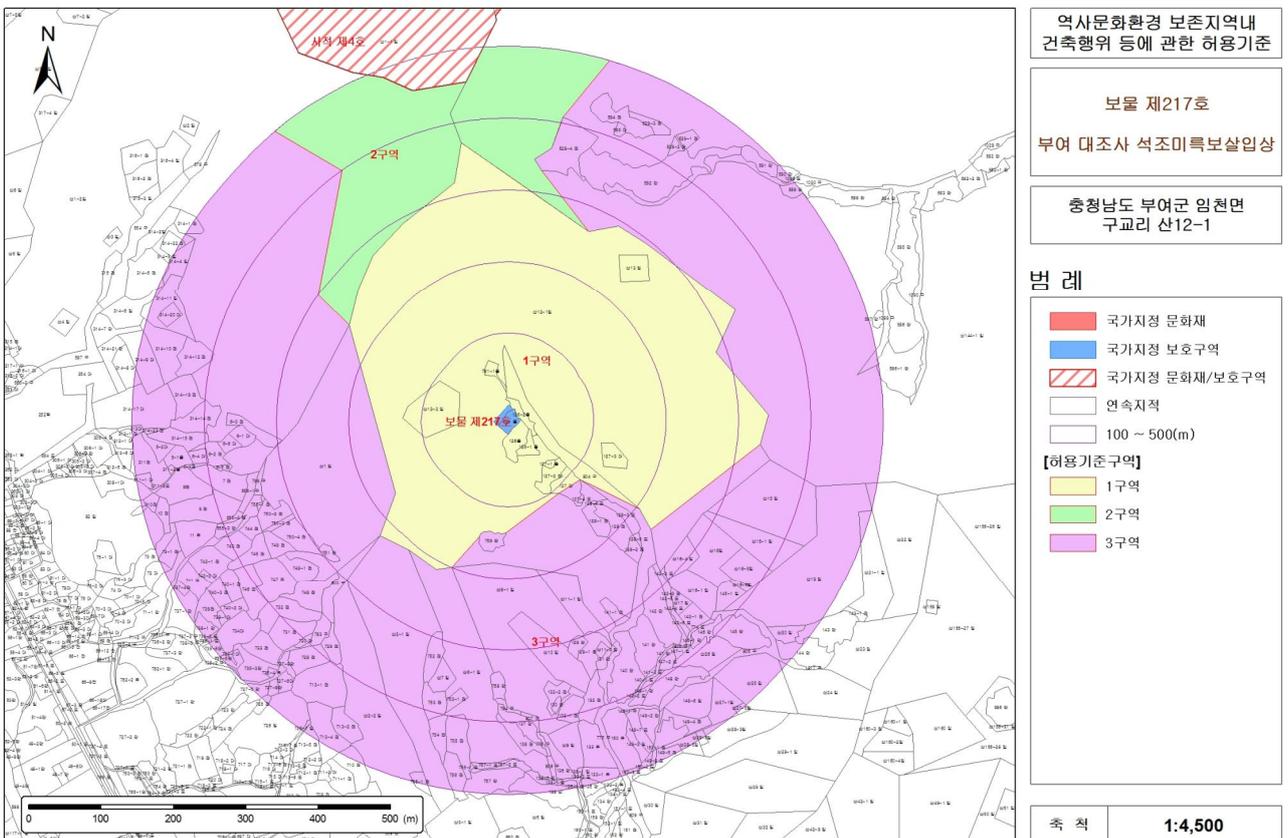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03. 보물 제217호 ‘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’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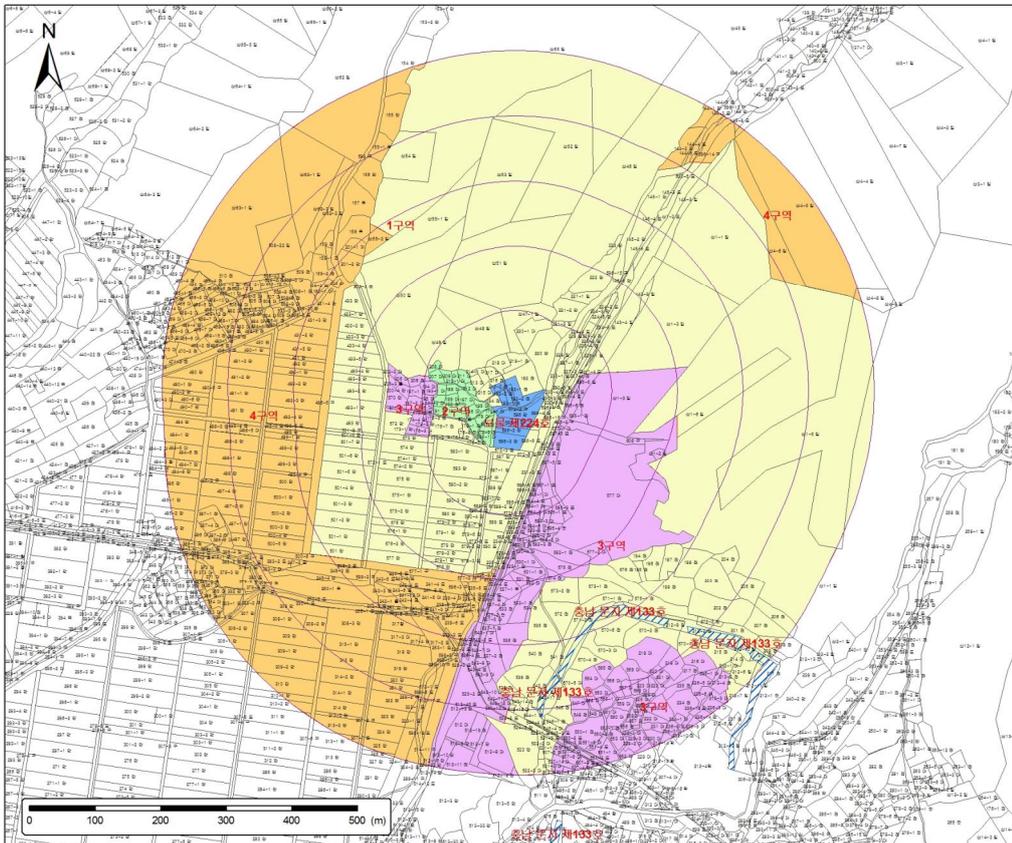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가지정문화재(사적 제3호 부여 기림성) 허용기준 준용	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04. 보물 제224호 ‘서천 성북리 오층석탑’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보물 제224호  
서천 성북리 오층석탑

충청남도 서천군  
비인면 성북리 182-1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▨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【허용기준구역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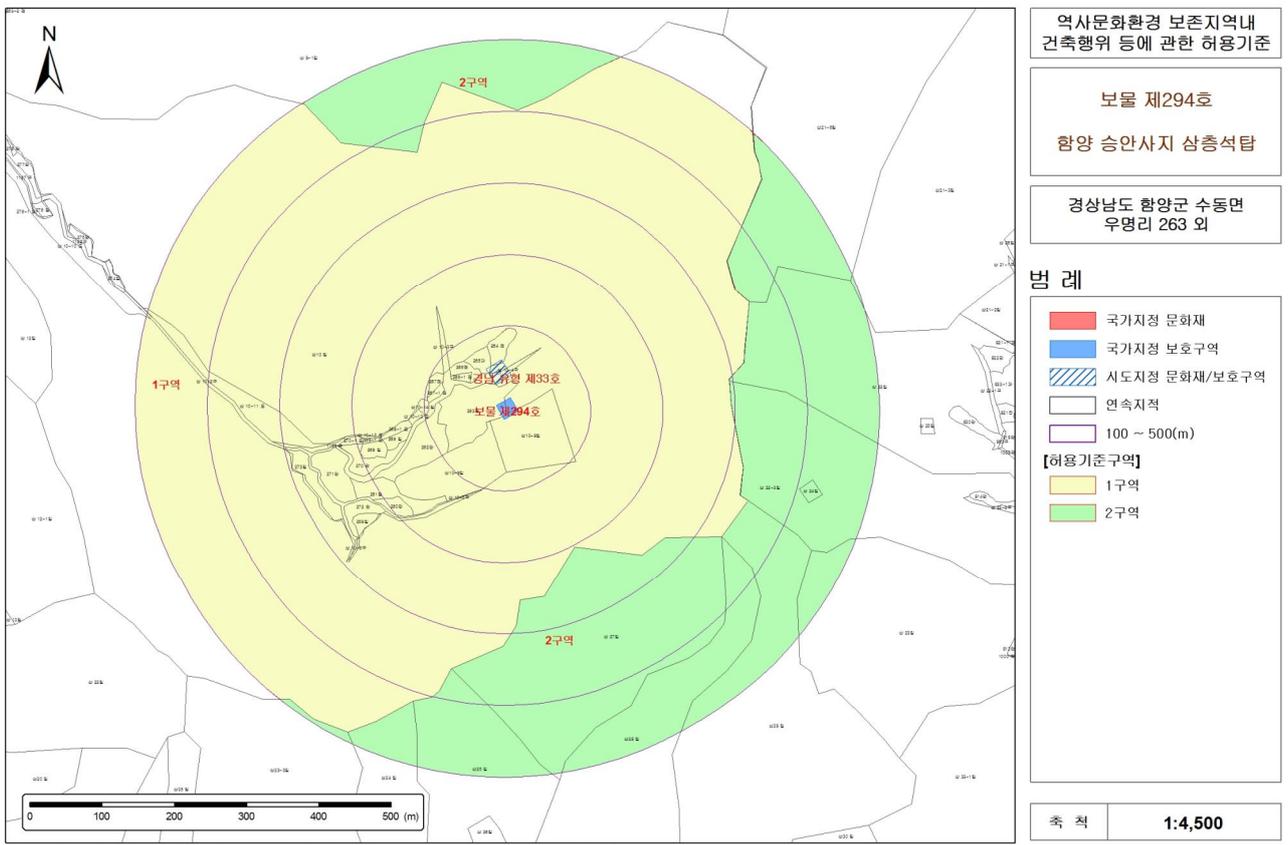
- 1구역
- 2구역
- 3구역
- 4구역

축척 1:5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리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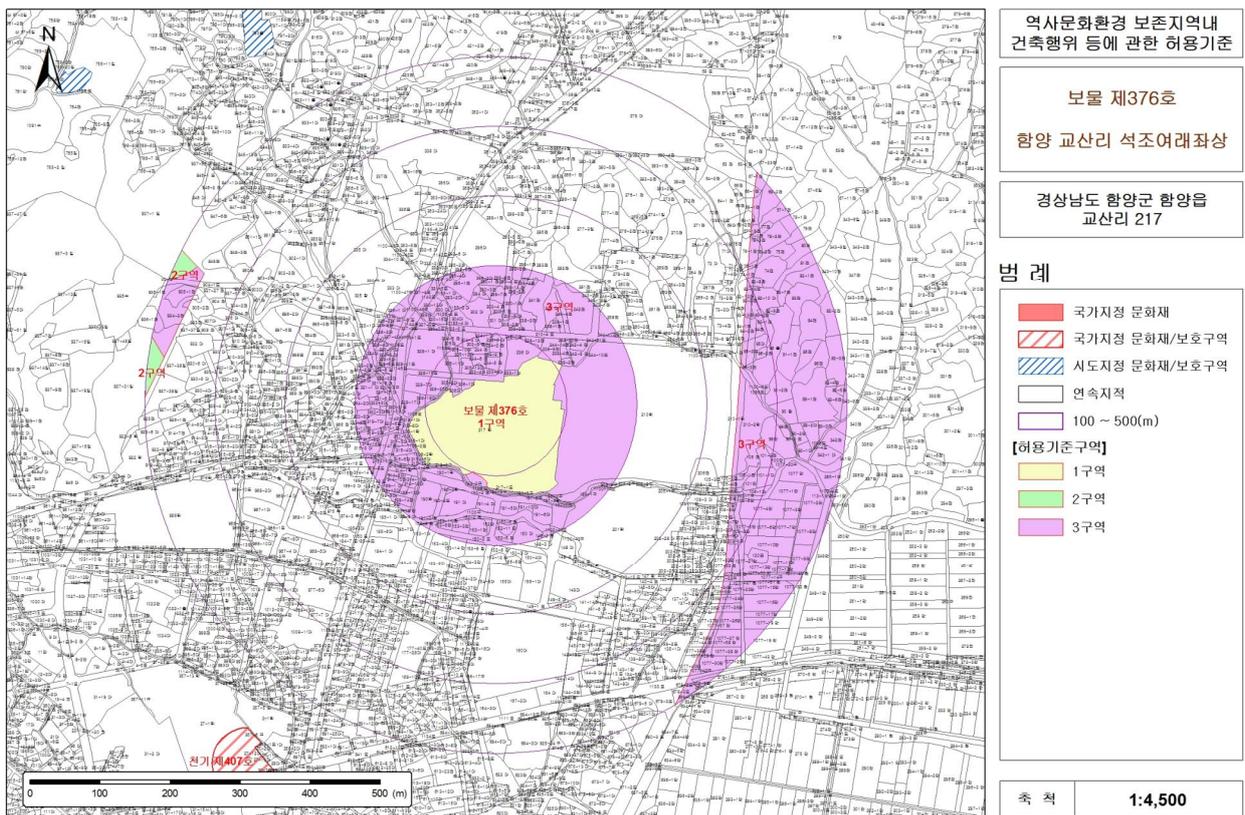
5. 보물 제294호 ‘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’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항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항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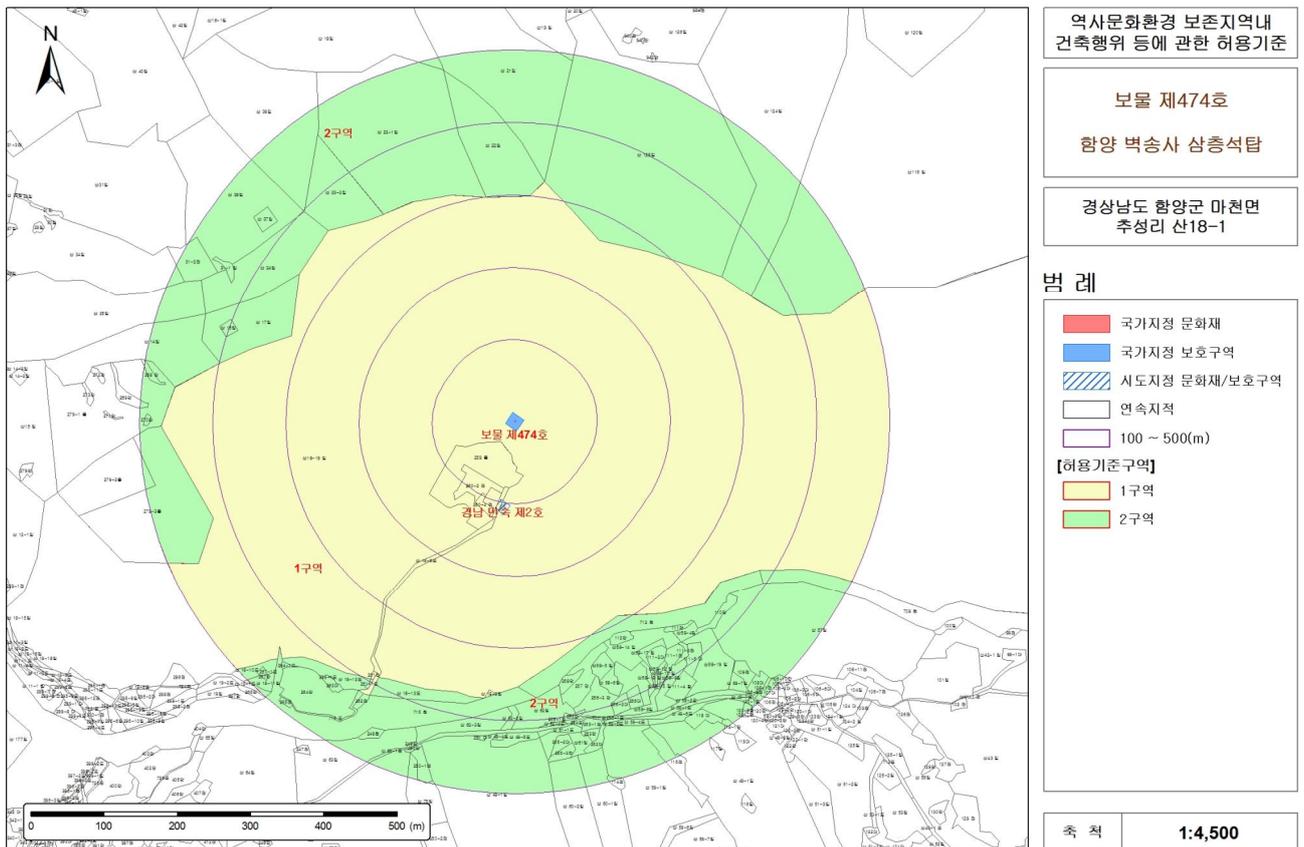
6. 보물 제376호 ‘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’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제3구역	○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,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) 및 시도지정문화재(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,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냥군묘역) 허용기준을 따름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7. 보물 제474호 ‘함양 벽송사 삼층석탑’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